

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 정오표 및 추록

****2025년 제6판을 발간하면서 2024년 5판에 대한 정오표와 추록을 배포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오표와 새로운 문제추가(기출 및 24년 판례 중 출제가능 문제),
중복되는 기존문제 중 상당부분을 삭제하였다. 추가문제는 표시를 했으나
삭제문제는 전부표시하지 않았음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제6판에서는 5판에서의 문제번호가 변경되었음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24년 2월 개정판) [정오표]

[무지개복스: 하영태저]

최종수정일: **2025.01.27**

P	수정 전	수정 후
19	문제27 ① [○] 상법 제12조 제1조.	① [○] 상법 제12조 제1항.
20	[문제28] 1번 지문 ① 상인은 지배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 하여야 한다.	① 상인은 지배인에게 부여한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5	[문제37] [해설]③ [×] 상법 제13조 제1항(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 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 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공동지배인도 동 일하다).	③ [×] 상법 제13조[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공동지배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55	[문제86]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또한 지점의 소재지 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 에 는 본점의 거래와 관련하여 서도 선 의 의 제3 자 에 게 대 항 하 지 못 한 다 . [해설]③ [×] 상법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 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 에 는 그 등기할 사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선 의 의 제3 자 에 게 대 항 하 지 못 한 다 .	③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③ [×] 상법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 등기의 효력): 24년 개정 삭제!!
56	[문제87] ①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	①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p>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① [O] 상법 제35조,</p>	<p>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한다. [해설]① [O] 상법 제34조.</p>
88	<p>문제17 1번 해설 ① [X]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p>	<p>① [X]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 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 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지 할 수 있다.</p>
116	<p>[문제60] [해설] ③ [X] 민법 제529조(격지자간의 매매계약의 청약은~.</p>	<p>[문제60] [해설] ③ [X]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매 매계약의 청약은~.</p>
126	<p>[문제126] ② 공중접객업자는 ~ 훼손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 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p>	<p>[문제126] ② 공중접객업자는 ~ 훼손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 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p>
191	<p>[문제20] ④ 합병회사의 상호와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⑤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④ [X] 상법 제178조 제2호(상호), 제5 호(본점의 소재지). ⑤ [O] 상법 제183조의2. [정답]④</p>	<p>④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 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 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 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 하여야 한다. [해설] ④ [O] 상법 제182조 제1항·제2항. ⑤ [X] 상법 제183조의2(사원의 업무집 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 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⑤</p>
192	<p>[문제22]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 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p>	<p>[문제22] ④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p>
193	<p>[문제24] 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에만 등기하면</p>	<p>②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 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p>

	된다. [해설] ② [X] 상법 제192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해설] ② [X] 상법 제192조(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01	[문제36] [해설] ④ [O] 청산절차가 진행되므로 회사의 계속은 문제 되지 않는다.	[문제36] [해설] ④ [O] 청산절차가 진행되므로 회사의 계속은 <u>인정</u> 되지 않는다.
202	[문제37] ③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333	[문제242] 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최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최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346	[문제261] [해설] ② [O] 상법 제385조 제1항(이사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u>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	중복삭제!!
385	[문제317] ①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317] ①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386	[문제317] [해설]① [O] 대판 2007.5.10. 2005다4284(이사회 승인~) 아직은 유효하다.=> 전체삭제	상법 제398조(미리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405	[문제346] ① 모회사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먼저 제소청구를 할 필요 없이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	[문제346] ① 모회사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할 수 있다.	
406	[문제348] ③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439	[문제398]① 준비금은~ 부채항목에 계상 하여야 하므로~ 한다. [해설]④ [X] 준비금의~않는다. =>추가	[문제398]① 준비금은~ 자본항목에 계상 하여야 하므로~ 한다. [해설]④ [X] 준비금의~않는다. 다만 회사의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변경등기는 하여야 한다.
439	[문제399]④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변동이 없다.	[문제399]④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하고 ~ 변동이 없다.
582	[문제3] 1번 해설 ① [X] 국내통화든~관계없으며, 실제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를 어음상의 발행일로 하는 경우를 선일자어음이라 한다).	① [X] 국내통화든~관계없으며, 실제발행일보다 후의 날짜를 어음상의 발행일로 하는 경우를 선일자어음이라 한다).
594	[문제20] [해설] ⑤ [X]	[문제20] [해설] ⑤ [X]
638	[문제81] [해설]⑤ [X] 피위조자는~부담한다(태판 1992.6.12. 91타40416).	[해설]⑤ [X] 피위조자는~부담한다(대판 1994.11.08. 93다21514).

[2] 법무사법원직 상법객관식(24년 2월 개정판) [추록]

[무지개복스: 하영태저]

최종수정일: 2025.01.31

면(P)	추록내용
3	<p>[2-1] 다음은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객관식 3면 보충</p> <p>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p> <p>②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p> <p>③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p> <p>④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p> <p>⑤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p> <p>해설</p> <p>①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②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③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 ④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⑤ [○] 대판 2024.3.12. 2021다309927.</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④</p>
4	<p>[3-1] 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면 보충</p> <p>①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칭과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명의자가 상인이 된다.</p> <p>② 주식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p> <p>③ 영업을 목적으로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p> <p>④ 의사나 변호사는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p>

	<p>② 제약회사의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영업에 관한 어음행위를 한 경우라도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p> <p>③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이 될 수 없다.</p> <p>④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p> <p><정답>②</p> <p><해설></p> <p>①[O]: 대판 1998.8.21. 97다6704.</p> <p>②[X]: 대판 1998.8.21. 97다6704(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p> <p>③[O]: 대판 1998.8.21. 97다6704.</p> <p>④[O]: 대판 1997.8.26. 96다36753.</p>
29	<p>【43-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29면 보충</p> <p>①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p> <p>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p> <p>③ 상무이사는 주식회사의 기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그 회사의 사용인을 겸임할 수 없다.</p> <p>④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경리장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경리사무 일체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인 자금차용은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리부장에게 자금차용에 관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p> <p>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상업사용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 본인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p>

	<p><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99.5.28. 98다34515. ②[O]: 대판 2006.6.15. 2006다13117. ③[X]: 대판 1996.8.23. 95다39472(주식회사의 기관인 상무이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을 겸임할 수 있다). ④[O]: 대판 1990.1.23. 88다카3250: 대판 1999.5.28. 98다34515(경리부장은 부포상에 해당하고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채무부담행위는 할 수 없다). ⑤[O]: 대판 2008.7.10. 2006다43767.</p>
47	<p>【72-1】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7면 보충</p> <p>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p> <p>②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p> <p>③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p> <p>④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p> <p><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01.4.13. 2000다10512. ②[O]: 대판 2011.4.14. 2010다91886. ③[X]: 대판 1989.10.10. 88다카8354(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④[O]: 대판 1988.2.9. 87다카1304(위법한 명의대여).</p>
51	<p>【77-1】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51면 보충</p> <p>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p>

	<p>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p> <p>②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면 된다. 상업장부에 관한 보존기간의 기산점은 그 장부를 폐쇄한 날이다.</p> <p>③ 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등기를 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마찬가지이다.</p> <p>④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지 않는다.</p> <p>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사원 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p> <p><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제2항. ②[O]: 상법 제33조(상업장부 등의 보존) 제1항. ③[O]: 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제1항-제2항. ④[X]: 대판1983.12.27. 83다카331(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 ⑤[O]: 대판 1996.10.29. 96다19321.</p>
63	<p>【97-1】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63면 보충</p> <p>①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p> <p>②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 하더라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p> <p>③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있어야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p> <p>④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5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p> <p>⑤ 영업을 양도한 자가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p> <p><정답>① <해설> ①[O]: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p>

	<p>목적을 위하여 <u>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u>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u>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u></p> <p>②[X]: 대판 1989.12.26. 88다카10128(<u>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u>)</p> <p>③[X]: 대판 2002.3.29. 2000두8455(<u>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u>)</p> <p>④[X]: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1항(<u>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u>)</p> <p>⑤[X]: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2항(<u>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u>)</p>
87	<p>【14-1】 상사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87면 보충</p> <p>①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고, 이를 ‘상사유치권’이라 한다.</p> <p>②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도 포함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p> <p>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사유치권을 배제할 수 있고, 이러한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명시적인 것은 물론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p> <p>④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는 물론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p> <p><정답>④</p> <p><해설></p> <p>①[O]: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p> <p>②[O]: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p> <p>③[O]: 대판 2012.9.27. 2012다37176.</p> <p>④[X]: 대판 2013.2.28. 2010다57350(<u>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u></p>

	<p>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p>
91	<p>【22-1】 상법상 상사유치권(제58조) 또는 유질계약(제59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91면 보충</p> <p>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약정을 허용하고 있다.</p> <p>② 상법은 유질약정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질약정이 포함된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p> <p>③ 상사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p> <p>④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p> <p>⑤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②[O]: 대판 2021.11.25. 2018다304007. ③[O]: 대판 2012.9.27. 2012다37176. ④[X]: 대판 2017.7.18. 2017다207499[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59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채무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O]: 대판 2017.7.18. 2017다207499.</p>
107	<p>【문47-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107면 보충</p> <p>① 甲이 乙에게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丙이 甲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乙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며, 乙이 丙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대물변제하였다면 乙의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의 효력이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p> <p>②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p> <p>③ 창고업자인 甲이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하지 않고 임치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고, 임치물의 소유자인 乙이 甲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상법 제166조 제1항의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다.</p> <p>④ 운송주선인이 자기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송주선인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p> <p>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p>

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③

<해설>

①[O]: 대판 2011.4.14. 2010다91886(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O]: 대판 2023.12.7. 2020다225138.

③[X]: 대판 2004.2.13. 2001다75318(상166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 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O]: 상법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항.

⑤[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

【47-2】 상사시효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07면 보충

①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한 경우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근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인인 매도인과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21.6.24. 2020다208621(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은 회사가 획득한 이익을 내부적으로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가 아니므로 배당금지청구권은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p>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린다).</p> <p>②[O]: 대판 2021.8.12. 2021다210195. ③[O]: 대판 2021.8.19. 2018다270876. ④[O]: 대판 2022.7.14. 2017다242232(일방적 상행위에 기한 행위도 상사시효 적용)</p>
118	<p>【62-1】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법원직/2024]=>객관식 118면 보충</p> <p>① 상호계산의 당사자는 일방이 상인이기만 하면 상대방은 상인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상호계산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상시 거래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상시 거래관계는 상호계산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존재할 필요는 없어 장래 상시 거래관계가 성립할 것을 예정하는 경우에도 상호계산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③ 상호계산을 할 수 있는 채권·채무는 거래상의 것에 한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 생기지 않는 채권도 상호계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상호계산의 기간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르되,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로 한다.</p> <p><정답>③ <해설> ①[O]: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상법 제77조(해지). ②[O]: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u>일정한 기간의 거래와 장래의 거래를 전제하고 있다.</u> ③[X]: 상법 제72조(상호계산의 의의): <u>일정한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을 전제하고 있다.</u> ④[O]: 상법 제74조(상호계산기간).</p>
129	<p>【80-1】 상법 제78조의 익명조합 또는 상법 제86조의2의 합자조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129면 보충</p> <p>① 합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p>

	<p>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p> <p>③ 익명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이나 노무의 출자도 가능하다.</p> <p>④ 시설투자자에게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외적 거래관계는 타방(경영자)이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에게만 권리의무가 귀속되도록 약정한 동업관계의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한다.</p> <p>⑤ 익명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 출자금이 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손실을 채우지 않고서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p> <p><정답>② <해설></p> <p>①[X]: 상법 제86조의7 제1항(업무집행조합원은 <u>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u>).</p> <p>②[O]: 상법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3항.</p> <p>③[X]: 상법 제86조(준용): 상법 제272조(익명조합원의 출자 목적물은 <u>금전 또는 현물에 한정된다</u>).</p> <p>④[X]: 대판 1983.5.10. 81다650(익명조합에서 <u>이익의 분배는 반드시 영업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분배하여야 한다</u>. 따라서 <u>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익명조합의 본질에 반한다</u>).</p> <p>⑤[X]: 상법 제82조 제1항(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p>
143	<p>【101-1】 위탁매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143면 보충</p> <p>① 채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의 성립 시기는 위탁금이나 위탁채권을 받을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직원이 채권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이를 위탁하는 고객으로부터 금원이나 채권을 수령하면 곧바로 위탁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후에 그 직원의 금원수납에 관한 처리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p> <p>②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는 무권리자의 처분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 채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p> <p>③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p> <p>④ 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p> <p>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1994.4.29. 94다2688. ②[O]: 대판 2011.7.14. 2011다31645. ③[O]: 대판 2008.5.29. 2005다6297. ④[X]: 대판 1996.1.23. 95다39854(위탁자의 위탁상품 공급으로 인한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나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은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상품 공급과 서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등가성이 없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위탁매매는 상법상 전형적 상행위이며 위탁매매인은 당연한 상인이고 위탁자도 통상 상인일 것이므로, 위탁자의 위탁매매인에 대한 매매 위탁으로 인한 위 의 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u>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u>).</p> <p>⑤[O]: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p>
151	<p>【112_1】 운송주선업 및 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51면 보충</p> <p>①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p> <p>②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p> <p>③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의 완성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속한다.</p> <p>④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②[O]: 대판 1987.10.13. 85다카1080. ③[O]: 대판 1983.4.26. 82누92. ④[X]: 대판 1999.7.13. 99다8711(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p>

167	<p>【136-1】 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사/2024]=>객관식 167면 보충</p> <p>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p> <p>②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함께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도 부담한다.</p> <p>③ 리스계약은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④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p> <p>⑤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p> <p><정답>②</p> <p><해설></p> <p>①[O]: 대판 2013.7.12. 2013다20571; 대판 1996.8.23. 95다51915.</p> <p>②[X]: 대판 2019.2.14. 2016다245418, 245425, 245432(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u>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u>).</p> <p>③[O]: 대판 1994.11.8. 94다23388(법적성질은 임대차·소비대차·매매 등이 혼합된 특수한 내용의 무명계약(비전형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p> <p>④[O]: 대판 1995.9.29. 93다3417.</p> <p>⑤[O]: 대판 1997.11.14. 95다11009(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p>

	<p>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p>
168	<p>【138-1】 금융리스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68면 보충</p> <p>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p> <p>②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p> <p>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p> <p>④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까지 부담한다.</p> <p><정답>④</p> <p><해설></p> <p>①[O]: 대판 2019.2.14. 2016다245418.</p> <p>②[O]: 대판 2019.2.14. 2016다245418.</p> <p>③[O]: 상법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항·제3항.</p> <p>④[X]: 대판 2019.2.14. 2016다245418(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 의무 또는 검사·확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p>
179	<p>【3-1】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179면 보충]</p> <p>①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룰 수는 없다.</p> <p>② 위 ①항의 법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③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령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p> <p>④ 실질상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고 그 재산이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이라 하더라도 유효</p>

	<p>하다.</p> <p>⑤ 임원퇴직금지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p> <p><정답>②</p> <p><해설></p> <p>①[O]: 대판 1976.4.13. 74다1755.</p> <p>②[X]: 대판 2007.2.22. 2005다73020: 대판 1993.6.11. 93다8702(실질적 1인회사의 발생원인으로는 1인의 사원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때 다른 사원들이 명의대여를 하거나 1인 사원에게 지분을 양도 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정관이나 주주명부에 이름만 남은 경우가 있다).</p> <p>③[O]: 대판 2007.2.22. 2005다73020.</p> <p>④[O]: 대판 1974.4.23. 73도2611. 다만 1인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83.12.13. 83도2330 전합).</p> <p>⑤[O]: 대판 2004.12.10. 2004다25123(임원퇴직금지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p>
182	<p>【8-1】 1인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직/2024] => 객관식 182면 보충</p> <p>①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② 위 ①번의 내용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p> <p>③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p> <p>④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p> <p><정답>③</p> <p><해설></p> <p>①[O]: 대판 1976.4.13. 74다1755.</p> <p>②[O]: 대판 2007.2.22. 2005다73020.</p> <p>③[X]: 대판 2020.6.4. 2016다241515(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p>

	<p>고 볼 수는 없다).</p> <p>④[O]: 대판 2004.12.10. 2004다25123.</p>
183	<p>[9-1] 다음은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객관식 183면 보충</p> <p>①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p> <p>②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p> <p>③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p> <p>④ ③의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④의 경우에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p> <p>해설</p> <p>① [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p> <p>② [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p> <p>③ [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p> <p>④ [O] 대판 2024.3.28. 2023다265700.</p> <p>⑤ [X] 대판 2024.3.28. 2023다265700(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⑤</p>
197	<p>[29-1]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197면 보충</p> <p>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해당 정관 규정이 관련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는 해당 정관 규정의 내용, 관련 상법 규정의 목적, 합명회사의 특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② 합명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나,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하였더라도 그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p>

	<p>위 대표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③ 합병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선고로써 권한을 상실시키거나,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라 법원의 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이 일치하여 업무집행사원을 해임함으로써 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다.</p> <p>④ 상법 제212조 제1항에 따르면 합병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을 자산 총액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p> <p><정답>④</p> <p><해설></p> <p>①[O]: 대판 2015.5.29. 2014다51541.</p> <p>②[O]: 대판 2014.5.29. 2013다212295.</p> <p>③[O]: 대판 2015.5.29. 2014다51541.</p> <p>④[X]: 대판 2012.4.12. 2010다27847(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하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p>
251	<p>【119-1】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 => 객관식 251면 보충</p>

	<p>(ㄱ)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회사의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p> <p>(ㄴ) 회사와 주주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에 따른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그 동의권 부여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함께 체결하였다면, 그 금원 지급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 위반으로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 또는 진보하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p> <p>(ㄷ) 주주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는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p> <p>(ㄹ) 주주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및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 계약 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p>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p> <p><정답>③ <해설> (ㄱ)[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ㄴ)[X]: 대판 2023.7.13. 2021다293213. (ㄷ)[X]: 대판 2023.7.13. 2022다224986. (ㄹ)[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p>
252	<p>【121-1】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52면 보충</p> <p>①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주주들을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p> <p>② 회사가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와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면, 이는 회사가 해당 주주에 대하여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p>

	<p>③ 위 ②번과 같은 약정은 다른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차등적 취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p> <p>④ 회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그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p> <p><정답>①</p> <p><해설></p> <p>①[X]: 대판 2023.7.13. 2021다293213(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p> <p>②[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p> <p>③[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p> <p>④[O]: 대판 2023.7.13. 2022다224986.</p>
261	<p>[135-1] 다음은 정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주주권 상실 여부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p> <p>[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따름]=>객관식 261면 보충</p> <p>①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는다.</p> <p>② 정관에서 정한 주주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해당 주주의 주식은 다른 주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한 정관 조항의 효력은 무효이다.</p> <p>③ 다만 ②의 경우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p> <p>④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과는 달리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퇴사가 인정되지 않는다.</p> <p>⑤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조항은 사실상 주주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물적 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p> <p><정답>③</p> <p><해설></p> <p>①[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2.12.24. 2002다54691.</p> <p>②[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p>

	<p>③[X]: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이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 소수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거나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p> <p>④[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p> <p>⑤[O]: 대판 2024.7.11., 2020다258824: 대판 2007.5.10. 2005다60147.</p>
263	<p>【285-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63면 보충</p> <p>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이사회외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p> <p>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p> <p>④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하여야 하지,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에게 할 수는 없다.</p> <p><정답>④</p> <p><해설></p> <p>①[O]: 대판 2022.7.28. 2019다202146.</p> <p>②[O]: 대판 1997.8.29. 97다18059.</p> <p>③[O]: 대판 1992.10.27. 92다19033.</p> <p>④[X]: 대판 1992.10.27. 92다19033(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다).</p>
265	<p>【141-1】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65면 보충</p> <p>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주식양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p> <p>②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p>

	<p>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p> <p>③ 위 ②번의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p> <p>④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정답>③</p> <p><해설></p> <p>①[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p> <p>②[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p> <p>③[X]: 대판 2017.3.23. 2015다248342(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p> <p>④[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p>
266	<p>【142-1】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법무사/2024] => 객관식 266면 보충</p> <p>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p> <p>②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의결권, 배당금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p> <p>③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p> <p>④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p> <p>⑤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p> <p><정답>①</p>

	<p><해설> ①[X]: 대판 2010.7.22. 2008다37193(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 대판 2018.10.12. 2017다221501 (주주명부기재의 추정력). ③[O]: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주주명부기재의 구속력). ④[O]: 상법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대판 2017.3.23. 2015다248342 전합(주주명부기재의 면책력). ⑤[O]: 대판 2019.8.14. 2017다231980.</p>
276	<p>[157-1] 다음은 명의개서의 효력과 주주총회의 하자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객관식 276면 보충</p> <p>①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그에 따라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주주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립과정의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총회 자체의 성립이 인정되기 어렵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대판 2017.3.23. 2015다248342전합. ②[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③[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대판 2019.8.14. 2017다231980. ④[X]: 대판 2024.6.13. 2018다261322(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u>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u>).</p>

<p>291</p>	<p>⑤[O]: 대판 2024.6.13. 2018다261322: 대판 1980.12.9. 80다128. 【178-1】주식회사 甲의 다음 행위 중 현행 상법 및 판례에 의할 때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 => 객관식 291면 보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ㄱ) 주식회사 甲이 발행주식 총수 1,000주 중 500주를 액면가 5,000원에 발행하였는데, 추가로 신주 500주를 액면가 10,000원에 발행하는 행위</p> <p>(ㄴ) 임원 A와 퇴직합의를 체결하면서 A가 보유한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주식회사 甲이 매수하게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甲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 약정에 기한 A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행위</p> <p>(ㄷ) 주식회사 甲이 주주 B로부터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p> <p>(ㄹ) 주식회사 甲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甲이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p> <p>(ㅁ) 주식회사 甲 발행 주식을 C, D가 공유하는데, 그 주주권을 행사할 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으로 권리행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甲이 주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C에게만 주주권 행사 관련 통지를 하는 행위</p> </div> <p>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p> <p><정답>⑤ <해설> (ㄱ)[불가]: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1항(액면주식은 균일하여야 한다). (ㄴ)[불가]: 상법 제341(자기주식의 취득)과 상법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규정에 위배한다. 대판 2021.10.28. 2020다208058(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ㄷ)[허용]: 대판 1996.6.25. 96다12726(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와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할 수 있다). (ㄹ)[불가]: 상법 제369조(의결권) 제2항(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ㅁ)[허용]: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2항(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p>
<p>296</p>	<p>【185-1】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 => 객관식 296면 보충</p> <p>①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p>

	<p>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정해진다.</p> <p>③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p> <p>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할 경우 그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p> <p><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 ②[X]: 대판 2018.7.26. 2016다237714(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u>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u>).③[O]: 대판 2011.3.24. 2010다85027. ④[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 ⑤[O]: 대판 2018.7.26. 2016다237714.</p>
296	<p>【186-1】 주권의 제권판결과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296면 보충</p> <p>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신고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그 증권 또는 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실질적인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p> <p>②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p> <p>③ 주권 등을 취득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권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p> <p>④ 기존 주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에 기하여 주권이 재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면, 재발행된 주권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그 소지인이 그 후 이를 선의취</p>

	<p>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p> <p><정답>②</p> <p><해설></p> <p>①[O]: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p> <p>②[X]: 대판 2000.9.8. 99다58471[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며,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③[O]: 대판 1995.8.22. 95다19980.</p> <p>④[O]: 대판 2013.12.12. 2011다112247.</p>
300	<p>【문191-1】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00면 보충</p> <p>①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항상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p> <p>②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p> <p>③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p> <p><정답>①</p> <p><해설></p> <p>①[X]: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므로 주시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p> <p>②[O]: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p> <p>③[O]: 상법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1항.</p> <p>④[O]: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1항: 대판 2017.7.14. 2016마230.</p>

310	<p>【206-1】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10면 보충</p> <p>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p> <p>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에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발행주식총수 중 합계 4/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p> <p>③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p> <p>④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p> <p><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10.6.24. 2010다13541. ②[X]: 대판 2002.12.24. 2000다69927(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에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③[O]: 대판 2022.9.7. 2022마5372. ④[O]: 대판 2022.12.16. 2022그734.</p>
317	<p>【217-1】 주주의 의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17면 보충</p> <p>①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p> <p>②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③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p> <p>④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p>

	<p>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p> <p><정답>②</p> <p><해설></p> <p>①[O]: 대판 2007.9.6. 2007다40000.</p> <p>②[X]: 대판 2017.8.18. 2015다5569(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u>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u>).</p> <p>③[O]: 대판 1991.4.30. 90마672.</p> <p>④[O]: 대판 2009.4.23. 2005다22701.</p>
321	<p>【223-1】 주주총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객관식 321면 보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ㄱ)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가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유효하다.</p> <p>(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면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p> <p>(ㄷ) 회사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p> <p>(ㄹ)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가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다.</p> </div> <p>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ㄹ)</p> <p><정답>②</p> <p><해설></p> <p>(ㄱ)[X]: 대판 2004.2.27. 2002다19797(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p> <p>(ㄴ)[X]: 대판 1992.5.12. 92다5638(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u>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u></p>

	<p>효하게 존속하고, 새로이 선임된 대표이사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p> <p>(ㄷ)[O]: 상법 제328조(준용) 제2항·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2항: 상법 제190조(대세효).</p> <p>(ㄹ)[O]: 대판 2003.7.11. 2001다45584.</p>
327	<p>【231-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27면 보충</p> <p>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p> <p>②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p> <p>③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p> <p>④ 회사가 회사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营业을 폐지하거나 중단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p> <p><정답>③ <해설></p> <p>①[O]: 대판 2014.10.15. 2013다38633. ②[O]: 대판 2018.4.26. 2017다288757. ③[X]: 대판 2022.6.9. 2018다228462(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④[O]: 대판 1992.8.18. 91다14369.</p>
330	<p>【237-1】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330면</p> <p>①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p> <p>②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p>

	<p>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p> <p>③ 주주총회의 개최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최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p> <p>④ 주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 주주총회에서 총회소집 당시 미리 주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회의의 목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의에 가담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여 곧바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p> <p><정답>③ <해설> ①[O]: 대판 1993.9.10. 93도698. ②[O]: 대판 2014.11.27. 2011다41420. ③[X]: 대판 2003.7.11. 2001다45584(주주총회의 개최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최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최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최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O]: 대판 2003.7.11. 2001다45584. ⑤[O]: 대판 1979.3.27. 79다19.</p>
336	<p>【246-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36면 보충</p> <p>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도,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가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p> <p>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p> <p>③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p>

	<p>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p> <p>④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데,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p> <p><정답>①</p> <p><해설></p> <p>①[X]: 대판 2014.11.27. 2011다41420(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령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빠뜨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p> <p>②[O]: 대판 2014.11.27. 2011다41420.</p> <p>③[O]: 대판 2004.2.27. 2002다19797.</p> <p>④[O]: 대판 2010.3.11. 2007다51505.</p>
342	<p>[255-1]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42면 보충</p> <p>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위 ①번에 따라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한다.</p> <p>③ 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된다.</p> <p>④ 위 ①번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p> <p><정답>③</p> <p><해설></p> <p>①[O]: 상법 제385조(해임) 제1항.</p> <p>②[O]: 대판 2023.8.31. 2023다220639.</p> <p>③[X]: 대판 2023.8.31. 2023다220639(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p>

	<p>면, <u>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임결의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유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사유로 삼거나 해임결의 시 참작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u></p> <p>④[O]: 대판 2006.11.23. 2004다49570.</p>
351	<p>【267-1】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351면 보충</p> <p>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p> <p>②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p> <p>③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p> <p>④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p> <p>⑤ 주식회사와 이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서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는 별도로 일정한 금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이사는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하여 이를</p>

	<p>청구할 수 있다.</p> <p><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5.9.10. 2015다213308: 대판 2015.7.23. 2014다236311(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②[O]: 대판 2016.1.28. 2014다11888. ③[O]: 대판 2019.7.4. 2017다17436. ④[O]: 대판 1979.11.27. 79다1599. ⑤[O]: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p>
358	<p>[277-1]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58면 보충</p> <p>①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직접 결의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에게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수 없다. ③ 상법 제391조 제1항의 본문은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④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p> <p><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11.6.24. 2009다35033(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에 이사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사회에서의 심의·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②[O]: 대판 2005.7.28. 2005다3649. ③[O]: 대판 1995.4.11. 94다33903. ④[O]: 대판 2019.8.14. 2019다204463.</p>
362	<p>[283-1] 다음은 대표이사의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객관식 362면 보충</p> <p>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p>

	<p>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p> <p>②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③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p> <p>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과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p> <p>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의 지위를 유지시킨 경우에도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p> <p><정답>⑤ <해설> ①[O]②[O]③[O]④[O]: 대판 2024.9.13. 2020다245552. ⑤[X]: 대판 2024.9.13. 2020다245552(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p>
372	<p>【296-1】 대표이사와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372면 보충</p> <p>①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 <p>② 위 ①번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형상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p> <p>③ 대표이사의 행위가 업무 또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p> <p>④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주식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17.9.26. 2014다27425.</p>

	<p>②[O]: 대판 2017.9.26. 2014다27425. ③[O]: 대판 2022.5.12. 2020다255375. ④[X]: 대판 2017.9.26. 2014다27425(행위의 <u>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u> 설령 그것이 <u>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u>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p>
394	<p>【328-1】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394면 보충</p> <p>①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임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③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법 제401조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⑤ 이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 해태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p> <p><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21.5.7. 2018다275888. ②[X]: 대판 2021.5.7. 2018다275888(<u>이행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진다</u>). ③[O]: 대판 2007.7.26. 2006다33609. ④[O]: 대판 2006.12.22. 2004다63354(<u>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u>). ⑤[O]: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p>

423	<p>【374-1】 비상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423면 보충</p> <p>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p> <p>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p> <p>③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 주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p> <p>④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⑤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p> <p><정답>③ <해설></p> <p>①[O]: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p> <p>②[O]: 상법 제423조(납입해태의 효과) 제2항.</p> <p>③[X]: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제1항(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p> <p>④[O]: 상법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2항.</p> <p>⑤[O]: 대판 1995.5.23. 94다36421.</p>
436	<p>【394-1】 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436면 보충</p> <p>①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주주총회의 자본금 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다.</p> <p>③ 상법은 자본금 감소의 무효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 또는 기타 절차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기타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현저히 불공정</p>

	<p>한 경우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④ 만일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 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p> <p>⑤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주주 등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로써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p> <p><정답>⑤</p> <p><해설></p> <p>①[O]: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p> <p>②[O]: 대판 2010.2.11. 2009다83599.</p> <p>③[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p> <p>④[O]: 대판 2020.11.26. 2018다283315.</p> <p>⑤[X]: 대판 2021.7.15. 2018다298744(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감자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p>
466	<p>【440-1】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66면 보충</p> <p>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된다.</p> <p>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는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6월의 출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p> <p>③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도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룰 수 있다. 이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인수권 행사나 그에 따른 신주 발행에 고유한 무효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거나 그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제기할 수 없다.</p> <p>④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 신주발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 결과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p> <p><정답>④</p>

	<p><해설> ①[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②[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③[O]: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 ④[X]: 대판 2022.10.27. 2021다201054(제소기간은 <u>신주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u> <u>야 한다</u>).</p>
482	<p>【464-1】 청산 및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객관식 482면 보충</p> <p>① 청산 중인 주식회사의 청산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후, 그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의와 아울러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던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p> <p>②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p> <p>③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p> <p>④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p> <p>⑤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되었으나 해산 당시 이사가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이사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p> <p><정답>⑤ <해설> ①[O]: 대판 1991.12.24. 91다4355. ②[O]: 대판 2005.4.15. 2003도7773. ③[O]: 대판 2019.10.23. 2012다46170 전합. ④[O]: 대판 1991.11.22. 91다22131. ⑤[X]: 대판 1991.11.22. 91다22131(<u>주식회사에 대하여 법원의 해산판결이 선고 확정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아울러 법원이 적법하게 그 청산인을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 당시 이사가 설사 해산판결 선고 이전에 부</u></p>

	<p>적법하게 해임된 바 있어 주주총회의 이사해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사로서는 청산인의 지위에 이를 방도가 없게 되었고, 한편 그 이사가 주식회사의 주주라 하여도 위와 같이 회사가 적법하게 해산된 데다가 적법한 청산인이 선임된 이상 주주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u>이사로서는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u>).</p>
469	<p>【444-1】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69면 보충</p> <p>①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는데, 위와 같은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해산하고 해산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p> <p>②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회사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고(제1항), 해산간주된 회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제3항), 회사계속 없이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제4항).</p> <p>③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된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제도는 거래안전 보호와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산간주등기만으로 곧바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p> <p>④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청산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하여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할 수 있다.</p> <p><정답>④ <해설></p> <p>①[O]: 대판 1964.5.5. 63마29.</p> <p>②[O]: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p> <p>③[O]: 대판 2019.10.23. 2012다46170(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서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p> <p>④[X]: 상법 제519조: 청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회사의 계속을 할 수 없다.</p>

470	<p>【445-1】상법상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470면 보충</p> <p>① 주식회사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경우 모두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p> <p>⑤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p> <p><정답>④ <해설> ①[O]: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②[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2항. ③[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3항. ④[X]: 상법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2항(간이합병은 주식매수청구 가능하다). 상법 제527의3(소규모합병) 제5항(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O]: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1항 후단.</p>
477	<p>【456-1】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법원직/2024]=>객관식 477면 보충</p> <p>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p> <p>②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서 분할회사, 분할신설회사 등(이하 '수혜회사'라 한다)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p> <p>③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p> <p>④ 회사분할에서 분할승인결의로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한 분할채무 승계를 정한 경우, 채권자보호를 위해 개별 최고가 필요한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를 말하</p>

	<p>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p> <p><정답>④</p> <p><해설></p> <p>①[O]: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1항·제2항·제3항.</p> <p>②[O]: 대판 2017.12.22. 2017다213197.</p> <p>③[O]: 대판 2017.5.30. 2016다34687.</p> <p>④[X]: 대판 2011.9.29. 2011다38516(회사의 장부 기타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는 물론이고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p>
497	<p>【1-1】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497면 보충</p> <p>①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비추어 무효이다.</p> <p>② 상법 제652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p> <p>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p> <p>⑤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p> <p><정답>①</p> <p><해설></p> <p>①[X]: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O]: 대판 2008.1.31. 2005다57806.</p> <p>③[O]: 대판 2018.4.12. 2017다229536.</p> <p>④[O]: 대판 2006.1.26. 2005다60017,60024.</p> <p>⑤[O]: 대판 1999.3.9. 98다43342.</p>
503	<p>【9-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503면 보충</p> <p>①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p>

	<p>②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p> <p>③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p> <p>④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p> <p>⑤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06.6.30. 2006다19672,19689. ②[O]: 대판 2001.11.27. 99다33311. ③[O]: 대판 2001.11.27. 99다33311. ④[X]: 대판 2003.11.13. 2001다49623(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O]: 대판 1997.9.26. 97다4494.</p>
504	<p>[10-1] 다음은 보험법상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객관식 504면 보충</p> <p>① 상법 제651조와 상법 제652조의 규정들을 별도로 두어 해지권의 행사기간을 달리 규율하는 취지나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는 중요한 사실이 보험계약 성립 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p> <p>②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p> <p>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는 사</p>

	<p>정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p> <p>④ ③의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p> <p>⑤ ④의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②[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③[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 ④[X]: 대판 2024.6.27. 2024다219766(보험자는 <u>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u>) ⑤[O]: 대판 2024.6.27. 2024다219766.</p>
521	<p>【35-1】 손해보험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객관식 521면 보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ㄱ) 손해보험에 있어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p> <p>(ㄴ)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 <p>(ㄷ)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초과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p> <p>(ㄹ)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p> </div> <p>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p> <p><정답>① <해설> (ㄱ)[X]: 상법 제671조(미평가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ㄴ)[O]: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2항. (ㄷ)[O]: 상법 제669조 제4항. (ㄹ)[O]: 상법 제674조(일부보험).</p>
546	<p>[68-1] 다음은 보험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객관식 546면 보충</p>

	<p>①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p> <p>②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우울장애 발병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p> <p>③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선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p> <p>④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다.</p> <p>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p> <p><정답>④ <해설> ①[O]: 대판 2021.2.4. 2017다281367. ②[O]: 대판 2021.2.4. 2017다281367. ③[O]: 대판 2024.5.9. 2021다297352. ④[X]: 대판 2024.5.9. 2021다297352(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⑤[O]: 대판 2024.5.9. 2021다297352.</p>
565	<p>【1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 => 객관식 565면 보충</p> <p>①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기 이전에 실제 운송인 및 터미널 운영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화물이 소훼되었다면, 선박대리점에게 운송물의 멸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p> <p>② 운송인은 그 운송을 위한 화물의 적부(積付)에 있어 선장·선원 내지 하역업자로 하여금 화물이 서로 부딪치거나, 혼합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박의 동요 등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운송물을 적당하게 선창 내에 배치하여야 하나, 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운송인은</p>

	<p>그러한 적부에 관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p> <p>③ 운송주선인은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입에는 변함이 없다.</p> <p>④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도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다.</p> <p>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p> <p><정답>② <해설> ①[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②[X]: 대판 2017.6.8. 2016다13109(적부가 독립된 하역업자나 송하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을 파악하여 그 화물의 성격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O]: 대판 1987.10.13. 85다카1080. ④[O]: 대판 2007.4.27. 2007다4943. ⑤[O]: 대판 2007.4.27. 2007다4943.</p>
566	<p>【14-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566면 보충</p> <p>① 어떤 자가 제조자나 공급자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p> <p>②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③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p> <p>④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p> <p>⑤ 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p> <p><정답>⑤</p>

	<p><해설> ①[O]: 대판 1999.2.5. 97다26593. ②[O]: 대판 2011.11.24. 2010도5014. ③[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 ④[O]: 대판 2009.10.15. 2009다39820. ⑤[X]: 대판 2023.12.14. 2022다208649(보세창고업자는 화물 인도 과정에서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가 화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u>보세창고업자가 화물 인도에 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선하증권을 취득하지 못한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u>).</p>
650	<p>【7-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법무사/2024]=>객관식 650면 보충</p> <p>①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p> <p>②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p> <p>③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p> <p>④ 어음발행인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p> <p>⑤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p> <p><정답>① <해설> ①[X]: 대판 2002.4.26. 2000다42915(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자 자기의 전자에게 피배서인이 백지인 배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교부하여 전자가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아 패소하자 다시 그 어음을 교부받아 그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어음발행인은 전자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p> <p>②[O]: 대판 1998.4.23. 95다36466 전합.</p>

	<p>③[O]: 대판 2017.2.3. 2016다41425. ④[O]: 대판 2005.3.24. 2004다71928. ⑤[O]: 대판 1998.11.24. 98다33154.</p>
672	<p>【25-1】 어음 및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법무사/2024]=>객관식 672면 보충</p> <p>① 자기앞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 수표법상의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수표법 제63조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한다.</p> <p>②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경우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p> <p>③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이 아니라 그 소지자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 또는 양수하였다는 점을 유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기앞수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자신이 이득상환청구권자임을 증명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④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p> <p>⑤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p> <p><정답>② <해설> ①[O]: 대판 1970.3.10. 69다 1370. ②[X]: 대판 2023.11.30. 2019다203286(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역시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인 자기앞수표 발행 은행 등은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라는 사정을 들어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O]: 대판 2023.11.30. 2019다203286. ④[O]: 대판 2010.5.20. 2009다48312 전합. ⑤[O]: 대판 2001.10.23. 99다64018: 대판 2003.5.30. 2003다16214.</p>